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16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9. 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9. 9. 9.
다. 상정일자 : 제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99. 9.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관재 도시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주택재개발사업(자력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나 건축물 등의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인이 공유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간 만료 1년전까지 건축합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격평가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주택재개발사업(자력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10조 및 제16조 단서 각각 삭제)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간 만료 1년전까지 건축합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14조 삭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용한 서울특별시 조례제명 변경(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택재개발사업(자력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가격평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도시재개발법(1999. 3. 31 법률 제5956호) 및 동법시행령(1999. 5. 12 대통령령 제16307호)이 개정됨에 따라 법제6조 제1항 등의 삭제로 우리구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이번 개정조례로 주민에게 어떤 득실이 있는가?

○답변요지(이관재 도시개발과장) : 안 제14조는 법규에 없는 사항으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고 안 제19조제1항제3호는 구청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1999. 9. .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 이유

주택재개발사업(자력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나 건축물 등의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인이 공유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간 만료 1년전까지 건축합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격평가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주택재개발사업(자력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10조 및 제16조 단서 각각 삭제)

나.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간 만료 1년전까지 건축합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14조 삭제)

다.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용한 서울특별시 조례제명 변경(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

3. 개 정 근 거

도시재개발법(1999. 3. 31 법률 제5,956호)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9. 5. 12 대통령령 제16,307호)

4. 조 례 안 : 별 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제3호 "토지대장, 가옥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를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를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권리변동의 신고 요령) ①사업시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권리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신고하지 않은 자가 부담한다.	(삭 제)
제14조(건축합의 기간)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의 건축합의 기간은 시행기간 만료기간 1년전까지로 한다.	(삭 제)
제16조(종전 토지등의 소유권) 관리처분계획의 될 종전토지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 다만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변동이 있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때에는 그 내용에 의한다.	제16조(종전 토지등의 소유권) -, -.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가격평가 절차) ①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영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가격평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가격평가 절차) - .
1. 소유권자가 명시된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의뢰명세서 3부	1. (현행과 같음)
2. 현황측량도(지적명시) 3부	2. (현행과 같음)
3. <u>토지대장, 가옥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u>	3. <u>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u>
4.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세부배치도면, 건축 재료시방서 용도등이 나타난 서류 3부	4. (현행과 같음)
5. 국.공유지 조서 및 매수관련 서류 2부	5. (현행과 같음)
②기타 가격 평가방법, 감정수수료의 부담 및 징수등에 관하여는 <u>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u>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기타 가격 평가방법, 감정수수료의 부담 및 징수등에 관하여는 <u>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u> 정하는 바에 의한다.